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설
 -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정의 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신한BNPP위안화본토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책임운용역: 이주원 부책임운용역: 없음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신한BNPP위안화본토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책임운용역: 박재우 부책임운용역: 안태훈
2.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 신한BNPP연금중국본토RQFII단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5년 6월 30일)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정의 정정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채권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채권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정의 정정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3.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3.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	-----	-----

<p>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제1부 5. 운용전문인력</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투자자신탁제1호(H)[채권]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신한BNPP위안화본토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책임운용역: 이주원 부책임운용역: 없음</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신한BNPP중국본토RQFII단기증권투자자신탁제1호(H)[채권]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신한BNPP위안화본토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책임운용역: 박재우 부책임운용역: 안태훈</p>
--	--	---